

동 지침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및 방역 조치 전환(23.6.1. 시행)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3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12판)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1판)

2023. 6. 12.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 요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4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5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6
5.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7
6. 행정사항	8
III. 지자체 협조사항	8
▷ 참 고 ◁	
1.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9
▷ 서 식 ◁	
1. (서식1) 장기요양기관 건강 모니터링	12
2. (서식2) 접촉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13
3. (서식3) 방문자건강 모니터링	14
4. (서식4)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표	15
5. (서식5) 소독 실시 대장 양식	16
9. (서식6) 환기 실시 대장 양식	17
▷ 붙 임 ◁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변경된 방역조치 사항	18
2.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22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23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 가이드라인	25
5.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소독 방법	31

I 개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23.6.1.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 관리 방향 제시**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
 - *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 수준 유지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시설 운영** 등을 제시함
 - * 동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3-3판(지자체용) (2023.6.1.)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2. 기본방향

-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 조정**
 -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22.4.18),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입소자(입소시) 선제 검사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
 - * 입소자(입소 시) 선제검사는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 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입소자 취식 허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022.4.18. 중대본)>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 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⑤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관리체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하여 근무자 등 출입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토록 함
 - * 방역관리자: 시설내 방역관리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가능)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유튜브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면회객·자원봉사자·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주 1회 점검(서식 4)

* 「요양시설 특별방역대책 및 PCR 선제검사 이행 여부 점검」(요양보험운영과 -5383(2021. 11. 30.)호에 따른 “매일 자체 점검 및 점검포 보관” 해제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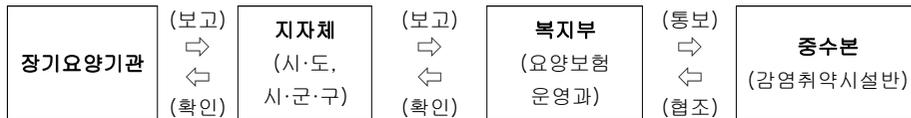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대응체계)**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 **확진자 다수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시설)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 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③ 방역 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 사항 결정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 협의 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관리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실시(서식 5, 6)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일 2회 이상 권고)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권고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일 3회 이상, 매회 10분 이상 권고)

* 환기는 상시로 하되 냉난방기 사용 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

○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충분히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자가진단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의무 착용
- 3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상황별 권고 마스크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우선) 권장		사용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하며,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의 출입 자체**
 - 외부인은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에 한해 출입 허용
 - 외부 강사는 3차 이상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허용
*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 ** 실습 전 RAT 검사,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 자원봉사자는 3차 이상 접종 완료자에 한하며, **출입전 RAT 검사 실시**
* 외부강사 허용 접종기준과 동일

-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및 증상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실시(서식3)

- 시설 입소자·이용자는 1일 2회, 종사자는 출근시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 (3) 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종사자는 5일, 입소(이용)자는 7일 격리를 권고**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023.6.1.)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

4. 시설 거주자의 면회, 외출·외박,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방역수칙 준수하에 접촉면회 허용(참고1 면회수칙)
* 사전예약제, 면회객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외출·외박) 접종력에 따른 허용
*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 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하고 증상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필요
- (프로그램 등 운영)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등)

5.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시설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함
 - (의심)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등)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필요시, 시·군·구(보건소)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
 - (의심)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소독
 - ※ 종사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확진환자(입소자)와 접촉자(종사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 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이용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감염취약시설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확진자 격리기준(2023.6.1.)		
격리기간	입소자	7일 권고
	종사자	5일 권고

6. 행정사항

- (유급휴가)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
 - ※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업무조정)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 채택·원격·교대근무 등 근무 형태 마련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과 지속적 소통 체계 유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다수 발생 등 비상 상황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장기요양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집단 감염·확산 등 감염병 발생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 (돌봄 제공)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휴관 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안부전화, 도시락 등) 마련,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 활용 통해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참고1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변경)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촉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 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야외 포함)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 손 소독제 입구 비치, 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상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4/9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6/9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붙임2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2023-06-01
13-3판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인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small>*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small>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인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small>※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small>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확인된 제품(일부하여 제출) 등

† 「유·중·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①과 기저질환자^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걸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마스크 선택법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마스크 폐기법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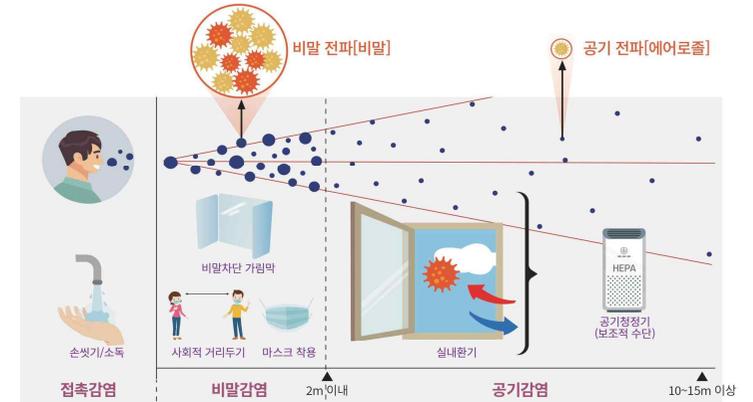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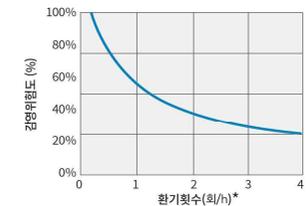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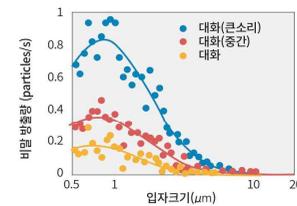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μ m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출처:NEJM, 2000)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감염위험도 변화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오염물질 농도 및 감염위험도 1/3로 감소



*환기량은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유출되는 양으로, 환기횟수 1회/h는 1시간에 실내체적 만큼 유입·유출되는 환기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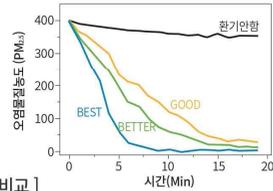
2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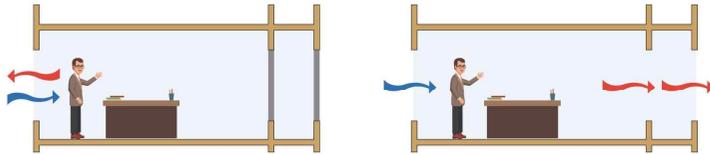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 중복지도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학원 수업중 자연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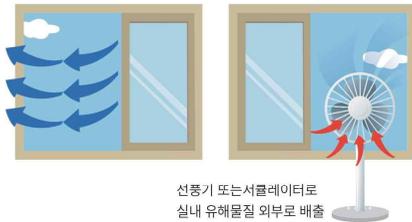
[학원 쉬는시간 자연환기 방법]

|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1개인 경우 환기방법]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2개인 경우 환기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유형별 환기가이드라인

3

|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일반원칙 |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



|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한 하고(내부순환모드 지양),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
- 건물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건물 및 환기설비 유형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사무소, 쇼핑몰, 병원 등]	환기시스템 가동 확인	외기도입 극대화	사용전 유해물질 배출	내부순환 금지	화장실팬 상시 가동
[소규모 점포]	자연 환기(수세)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위생배관 봉수 확인	
[다중이용시설]	자연 환기(상시)	기계설비활용 환기량 증대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4

|(내부순환모드 지양)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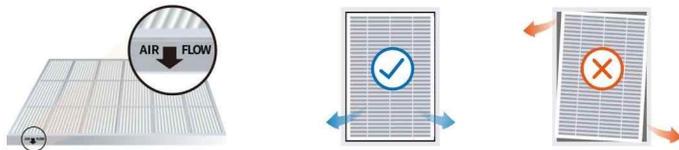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지양(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구분	내부순환모드	혼합모드	전외기 급기 / 전배기 모드
시스템 구성도			
취출구농도 측정사례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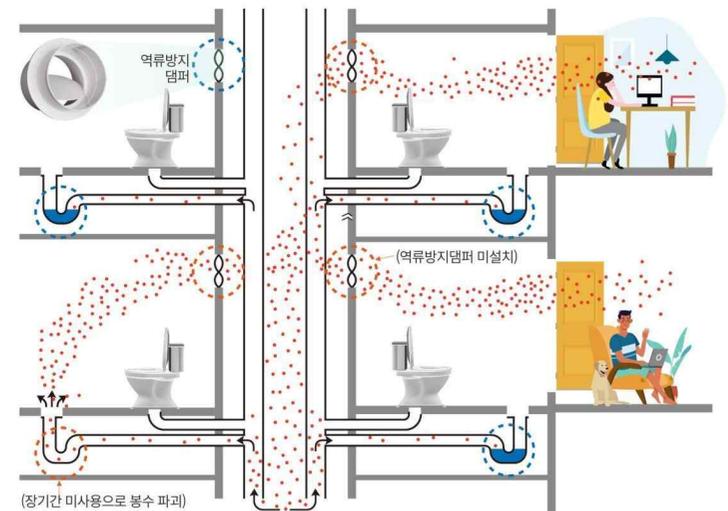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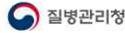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021.01.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9

2021.01.1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

2021.01.13.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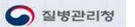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3/9

2021.01.13.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